

2019년 최신개정판 <2019 외환전문역 1종> 1쇄 오타정정노트

(2019. 7. 5. 업데이트)

페이지	수정 부분	수정 전 → 수정 후	수정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과목 외환관리실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43	7 번 문제_보기 ①	①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3 천불 이하이다. → ①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 천불 이하이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19.6.26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51	19 번 문제_보기 ③	③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환전업무의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 천불 이하로 외국통화 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다. → ③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환전업무의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 천불 이하로 외국통화 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60	1 번 문제_보기 ①	① 건당 미화 3 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→ ① 건당 미화 5 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61	4 번 문제_보기 ①	① 건당 미화 3 천불 초과 송금 연간누계금액이 1 만불 초과 시에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게 통보된다. → ① 건당 미화 5 천불 초과 송금 연간누계금액이 1 만불 초과 시에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게 통보된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61	4 번 문제_보기 ④	④ 건당 3 천불 이하의 송금은 송금누계에 포함되지 않고, 지정거래대상에서도 제외된다. → ④ 건당 5 천불 이하의 송금은 송금누계에 포함되지 않고, 지정거래대상에서도 제외된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61	정답 및 해설_문제 4 번	② 건당 3 천불 초과 시에는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. → ② 건당 5 천불 초과 시에는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62	6 번 문제_보기 ①, ③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A</u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B</u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C</u></th> <th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A</u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B</u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C</u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</td> <td>3 천만불</td> <td>3천불</td> <td>5 만불</td> <td>→</td> <td>①</td> <td>3 천만불</td> <td>5천불</td> <td>5 만불</td> </tr> <tr> <td>②</td> <td>3 천만불</td> <td>1 만불</td> <td>10 만불</td> <td></td> <td>②</td> <td>3 천만불</td> <td>1 만불</td> <td>10 만불</td> </tr> <tr> <td>③</td> <td>5 천만불</td> <td>3천불</td> <td>5 만불</td> <td></td> <td>③</td> <td>5 천만불</td> <td>5천불</td> <td>5 만불</td> </tr> <tr> <td>④</td> <td>5 천만불</td> <td>1 만불</td> <td>10 만불</td> <td></td> <td>④</td> <td>5 천만불</td> <td>1 만불</td> <td>10 만불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<u>A</u>	<u>B</u>	<u>C</u>		<u>A</u>	<u>B</u>	<u>C</u>	①	3 천만불	3 천불	5 만불	→	①	3 천만불	5 천불	5 만불	②	3 천만불	1 만불	10 만불		②	3 천만불	1 만불	10 만불	③	5 천만불	3 천불	5 만불		③	5 천만불	5 천불	5 만불	④	5 천만불	1 만불	10 만불		④	5 천만불	1 만불
	<u>A</u>	<u>B</u>	<u>C</u>		<u>A</u>	<u>B</u>	<u>C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	3 천만불	3 천불	5 만불	→	①	3 천만불	5 천불	5 만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	3 천만불	1 만불	10 만불		②	3 천만불	1 만불	10 만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	5 천만불	3 천불	5 만불		③	5 천만불	5 천불	5 만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	5 천만불	1 만불	10 만불		④	5 천만불	1 만불	10 만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	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
p.63	정답 및 해설_문제 6 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본거래로서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(3 천불) 초과 (5 만불) 이내이고, 연간 영수누계금액이 ~ → • 자본거래로서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(5 천불) 초과 (5 만불) 이내이고, 연간 영수누계금액이 ~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
p.70	정답 및 해설_문제 1 번	<p>① 일방의 금액(분할 지급등은 합산함)이 미화 3 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신고예외사항이다.</p> <p>→① 일방의 금액(분할 지급등은 합산함)이 미화 5 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신고예외사항이다.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
p.74	1 번 문제_보기 ①	<p>① 일방의 금액(분할 지급등은 합산함)이 미화 3 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</p> <p>→ ① 일방의 금액(분할 지급등은 합산함)이 미화 5 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
p.77	정답 및 해설_문제 5 번	<p>③ •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~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방의 금액(분할 지급등의 경우 합산한 금액)이 미화 (3)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~ <p>→</p> <p>④ •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~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방의 금액(분할 지급등의 경우 합산한 금액)이 미화 (5)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~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
p.78	11 번 문제_보기 ③	<p>③ 제 3 자 지급등의 방법으로 미화 3 천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예외거래에 해당한다.</p> <p>→ ③ 제 3 자 지급등의 방법으로 미화 5 천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예외거래에 해당한다.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
p.94	1 번 문제_보기 ③	<p>③ 해외직접투자의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미화 3 천불 이내인 경우</p> <p>→ ③ 해외직접투자의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미화 5 천불 이내인 경우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
p.94	1 번 문제_보기 ④	<p>④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를 제외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3 천불 초과 5 만불 이내이고, ~</p> <p>→ ④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를 제외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5 천불 초과 5 만불 이내이고, ~</p>

		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95	정답 및 해설_문제 1 번	③ 부동산거래 및 해외직접투자를 제외한 자본거래의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미화 3 천불 이내인 경우가 신고예외거래이다. → ③ 부동산거래 및 해외직접투자를 제외한 자본거래의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미화 5 천불 이내인 경우가 신고예외거래이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19.6.26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97	정답 및 해설_문제 9 번	④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3 천불 이내에서 ~ → ④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 천불 이내에서 ~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.101	문제 19 번_지문, 보기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(A) 이내로서 최대 미화 (B)까지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(C) 이내에 수리를 받거나, ~</p> <table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A</u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B</u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C</u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분의 1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 만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 개월</td> </tr> <tr> <td>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분의 2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 만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 개월</td> </tr> <tr> <td>③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분의 1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만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 개월</td> </tr> <tr> <td>④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분의 2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만불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 개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→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(A) 까지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(B) 이내에 수리를 받거나, ~</p> <table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A</u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B</u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분의 1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 개월</td> </tr> <tr> <td>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분의 2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 개월</td> </tr> <tr> <td>③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분의 1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 개월</td> </tr> <tr> <td>④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 분의 2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 개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div> </div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		<u>A</u>	<u>B</u>	<u>C</u>	①	100 분의 10	10 만불	3 개월	②	100 분의 20	10 만불	6 개월	③	100 분의 10	20 만불	3 개월	④	100 분의 20	20 만불	6 개월		<u>A</u>	<u>B</u>	①	100 분의 10	3 개월	②	100 분의 20	3 개월	③	100 분의 10	6 개월	④	100 분의 20	6 개월	19.7.2.
	<u>A</u>	<u>B</u>	<u>C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	100 분의 10	10 만불	3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	100 분의 20	10 만불	6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	100 분의 10	20 만불	3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	100 분의 20	20 만불	6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A</u>	<u>B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	100 분의 10	3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	100 분의 20	3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	100 분의 10	6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	100 분의 20	6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p.101	정답 및 해설_문제 19	<p>③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(100 분의 10) 이내로서 최대 미화 (20 만불)까지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(3 개월) 이내에 신고하여 ~</p> <p>→</p> <p>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(100 분의 10)까지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(3 개월) 이내에 신고하여 ~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	
p.125	문제 4 번_디렉션	<p>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옳게 연결된 것은?</p> <p>→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?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	
p.138	15 번 문제_보기 ①	<p>① 건당 3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</p> <p>→ ①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	19.6.26.
p.148	약정 극복 실천테스트 해설_문제 11 번	<p>11 - ① 지급한도는 건당 3천불 초과 연간 누계금액 미화 5만불 이내이다.</p> <p>→ 11 - ① 지급한도는 건당 5천불 초과 연간 누계금액 미화 5만불 이내이다.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	
제2과목 외국환거래실무			
p.173	문제 7 번_보기 ③	<p>③ 타발송금 연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의 거래인 경우에는 동 수령(영수)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없이도 지급이 가능하다.</p> <p>→</p> <p>③ 타발송금 금액이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동 수령(영수)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.</p> <p>* 위의 내용은 금융연수원의 기본서 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	19.7.2.
p.182	문제 11 번_보기 ②	<p>② 일부 특급송금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, 외화자금이 수취인계좌로 실시간 입금되지 않는다.</p> <p>→</p> <p>② 특급송금이나 최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제공하는 송금서비스 같은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송금 서비스도 있다.</p> <p>* 위의 내용은 금융연수원의 기본서 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	19.7.2.
p.182	문제 11 번_보기 ④	<p>④ 미화 3천불 이하의 소액송금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하나의 송금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한다.</p> <p>→ ④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송금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하나의 송금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한다.</p> <p>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</p>	19.6.26.

p.183	정답 및 해설_문제 11 번	④ 미화 3 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. → ④ 미화 5 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
p.183	정답 및 해설_문제 14 보기 ④	④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 사유이며, 미화 3 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이 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한 경우이다. → ④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 사유이며, 미화 5 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이 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한 경우이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19.7.5.
p.185	정답 및 해설_문제 15 보기 ①	① 미화 3 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. → ① 미화 5 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
p.186	문제 18 번_보기 ③	③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미화 2 만불 타발송금인 경우 미화 5 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수령(영수)하는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'이전거래'로 간주하여 매입이 가능하다. → ③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2 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수령(영수)하는 경우에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* 위의 내용은 금융연수원의 기본서 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19.7.2.
p.186	문제 19 번_보기 ③	③ 연계 누계금액이 미화 5 만불 이내인 경우에는 거주자로부터 동 수령(영수)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아도 지급 가능하다. → ③ 거주자(외국인 거주자 제외)가 미화 5 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을 수령(영수)하는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'영수확인서'를 받고 '이전거래'로 간주하여 매입한다. * 위의 내용은 금융연수원의 기본서 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
p.187	정답 및 해설_문제 18 번	① 수령행위가 신고대상인 자본거래라도 거주자의 거래 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3 천불 초과 5 만불 이내이고, ~ → ① 수령행위가 신고대상인 자본거래라도 거주자의 거래 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5 천불 초과 5 만불 이내이고, ~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19.6.26.

p.259	약점 극복 실전테스트 해설_문제 7 번_보기 ①	① 미화 3 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. → ① 미화 5 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, 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
적중 예상 실전모의고사			
p.4	문제 17 번_보기 ②	② 일방의 금액이 미화 3 천불 이하의 소액상계인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. → ② 일방의 금액이 미화 5 천불 이하의 소액상계인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. * 위의 내용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.	19.6.26.